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742
----------	------

2017년 4월 28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이명희 의원 외 14명
- 나. 제안일 : 2017년 4월 5일
- 다. 회부일 : 2017년 4월 7일
- 라. 상정일 : 제27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
2017년 4월 21일 상정·의결(수정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명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표창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, 공정하고 엄격한 표창 규정 적용을 통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표창수여 금지 대상을 규정함(안 제6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 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표창문화 정착을 통해 서울시 표창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창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6조).

※ 표창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지역사회발전, 사

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 및 자치구, 개인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,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과 상장 및 감사장으로 분류되고, ‘표창장과 상장’은 시장과 3급 이상의 소속기관의 장, 소방서장이 수여하며, ‘감사장’은 계급과 관련 없이 소속기관의 장이면 수여할 수 있음.

※ 표창 분류

구 분	수여대상	수여 사유
표창장	① 시·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(이하 공무원 등)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	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함.
	② 자치구 및 소속기관	우수한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
	③ 개인 및 단체	지역사회발전,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현저히 기여함.
	④ 순직 공무원	공무수행 중 순직
상장	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, 자치구, 개인 및 단체	교육훈련성적 등 우수한 평가성적
		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
감사장	개인 및 단체	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
		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

- 개정안은 현행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표창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‘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,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, 직무와 관련하여 훈계·경고·주의를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,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’가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받지 못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이중표창의 금지)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.	제6조(표창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. 1. 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

	2.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
	3. 직무와 관련하여 훈계·경고·주의를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	4.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

-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표창현황을 살펴보면, 2014년 6,271건, 2015년 6,495건, 2016년 7,285건이며, 시민 표창현황은 2014년 6,703건, 2015년 8,595건, 2016년 8,822건으로 매년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
▶ 서울시장 표창 및 상장·감사장 수여 현황(공무원표창)

(기준 : 2016.10.31.)

구분	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계	31,450	5,749	5,650	6,271	6,495	7,285
표창장	28,931	5,363	5,240	5,634	5,912	6,782
상장	2,462	381	397	626	573	485
감사장	57	5	13	11	10	18

▶ 서울시장 표창 및 상장·감사장 수여 현황(시민표창)

(기준 : 2016.10.31.)

구분	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계	35,746	5,324	6,302	6,703	8,595	8,822
표창장	22,760	3,639	3,653	4,510	5,273	5,685
상장	12,495	1,602	2,541	2,111	3,179	3,062
감사장	491	83	108	82	143	75

- 서울시 표창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창수여 대상자의 전반적 성과,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고,
- 표창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개검증, 현지실사, 주변평판 및 여론 확인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부적격자에게 표창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.
- 서울시의 경우 표창의 규모가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례적·정기적 표창이 아닌 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표창문화 정착을 위해 엄격하고 공

정한 심사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음.

- 따라서, 개정안과 같이 사전에 표창 금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표창수여에 대한 공정성·투명성을 높이고, 서울시 표창의 영예성과 신뢰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집행부는 표창 조례에 표창금지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엄정한 표창 운영 및 표창의 영예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, 표창금지사유 중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주요 비위자에 대한 표창금지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, 기타 표창금지 및 추천 제한 사유는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표창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, 표창금지 대상을 공무원과 시민을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
※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일반국민 포상과 공무원 포상의 추천제한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표창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,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표창제외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주요내용

- 표창금지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 규정함(안 제6조제1호).
- 안 제2호와 안 제3호를 삭제하고, 안 제3호에 기타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함.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742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4월 21일
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표창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,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표창제외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표창 금지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 규정함(안 제6조제1호).
- 안 제2호와 안 제3호를 삭제하고, 안 제3호에 기타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함.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표창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.

1. 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
2.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
3. 기타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이중표창의 금지)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.	제6조(표창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.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3. 직무와 관련하여 훈계·경고·주의를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	제6조(표창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.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. 기타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표창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 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.

1. 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
2.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
3. 기타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이중표창의 금지)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.	제6조(표창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 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.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. 기타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